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p><b>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b></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등록정보, 소득금액증명(사실확인증명 포함), 건강보험, 수급 금융 계좌번호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유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아동양육비 신청이 제한됩니다.</p>	[ ]
<p><b>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b></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급자격 확인, 양육비 지급 관련 제반 행정처리, 연구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및 생활상태에 관한 내용</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지원 중단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아동양육비 신청이 제한됩니다.</p>	[ ]
<p><b>3.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사항</b></p> <p><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p> <p><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유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아동양육비 신청이 제한됩니다.</p>	[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p>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p>	[ ]
<p>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p>	
<p>3.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신청 시 구비·제출서류 안내	제출하는 곳
<p>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의 모 또는 부 확인), 3. 사실혼관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포함),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금액증명(증명 귀속연도는 2021년, 부와 모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내역이 조회되는 것은 전부 제출해야함), 6. 사실증명(2021년 소득금액이 없어서 소득금액증명이 발급 불가능한 자로서 부와 모 각각 해당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함), 7. (수급계좌번호 기재된)통장 사본 1부</p>	<p>관할 시·군·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p>





<서식 제4호>

수급자격 확인서(담당공무원 작성)									
신청자	성명 : 신청일자 : 대상아동 이름 / 생년월일 : /								
확인 일시	2022. . .( )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청소년부모 확인	부(父)	이름 :		모(母)	이름 :		혼인 구분	법률혼 / 사실혼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자녀1	이름 :		자녀2	이름 :		자녀3	이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제출서류 확인									
부(父)와 모(母)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지 ? 예( ) / 아니오( )									
2021 귀속년도 소득확인	부(父)의 월소득			모(母)의 월소득					
	가구 월소득 총합			가구원수 총합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가구의 월소득>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중위소득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8	5,019,474	
제출서류 확인									
2021년 가구원수별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인지? 예( ) / 아니오( )									
년 월 일									
기 관 명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직인                     </div>				

<서식 제5호>

사 실 조 사 보 고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서식 제6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아동 이름 및 생년월일	/		급여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비고						

1. 귀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날짜에 맞추어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수급 아동의 경우,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
6.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대 상 제 외

신청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상제외 사유	[ ] 소득금액이 선정기준 초과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 수급
	[ ] 수급자격심사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상세 사유 기재	





<서식 제8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b></p>					
안 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